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6 -
“유기 반려동물 입양하러 갔더니 매매 권유?”
무늬만 보호소 ‘신종 펫샵 근절’ 공약 발표

- 무늬만 ‘동물보호소’, 실제로는 반려동물 매매 및 파양비 편취하는 펫샵 늘어나
- 법의 사각지대 악용해 부당이익 취하면서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 방해하는 잘못된 관행
- 동물보호소와 일반 동물 판매업 분리, 영리 목적 파양과 입양 중개 금지 등 대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2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동물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유기동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호소’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반려동물 매매에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신종 펫샵’을 근절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편승해 보호소라는 명칭으로 반려인을 현혹하는 신종 펫샵이 늘고 있다.

이들은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방문한 반려인에게 동물 구입을 유도하거나, 반려동물 양육 포기자에게 파양비 명목으로 비용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소’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특별한 제재나 관리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신종 펫샵이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며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심지어 다시 되팔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방해하고 있어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으로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에 ‘동물보호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의 복지·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와 일반적인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나아가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Q&A

Q1. 신종 펫샵이란?

☞ ‘안락사 없는 요양 보호소’와 같이 ‘보호소’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파양 및 입양을 중개하거나 유기동물 광고 후 방문한 사람들에게 펫샵의 동물구매를 유도하는 영업을 하는 곳을 지칭합니다.

Q2. 동물보호법상 영업 규정은?

☞ 현행 동물보호법은 8개*의 영업을 규정하고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펫샵과 같이 파양동물을 보호하거나 입양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Q3.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동물보호법 내용은?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신설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을 규정(국회 농식품부 법안소위 심사 통과, 법사위 심사 중)

제39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Q4. 부득이하게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안은?

☞ 현재 법사위 심사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도가 신설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방정부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46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2.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 ②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